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화법

주체 106(2017)년 10 월 12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937 호로 채택

주체 111(2022)년 12 월 6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937 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정보화법의 기본

제 1 조 (정보화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보화법은 정보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관리 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정보화하며 사회발전을 추동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정보화중시원칙)

정보화사업은 정보기술과 정보기술수단을 활용하여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서 과학성, 효율성, 편리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정보화를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적극 실현해나가도록 한다.

제 3 조 (정보화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원칙)

나라의 정보화를 세계적수준으로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보화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나라의 정보화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 4 조 (정보화사업질서의 확립원칙)

국가는 정보화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정보화 사업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 5 조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정보화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정보화를 적극 다그 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정보화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6 조 (정보보안원칙)

정보보안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정보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 구이다.

국가는 정보보안사업을 강화하여 정보화실현에서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 7 조 (정보화분야에서의 국제적교류와 협조)

국가는 정보화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 8 조 (다른 법과의 관계)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정보화 계획

제 9 조 (정보화전망계획)

중앙정보화지도기 관은 국가의 정보화정책에 기초하여 정보화의 발전방향과 목표, 실현방도 같은것을 밝힌 국가정보화전망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정보화지도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정보화전망계획에 기초하여 자기 지역과 부문, 자기 단위의 정보화전망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전망계획은 내각의 비준을, 지역과 부문의 정보화전망계획은 중앙정보화지도기 관의 승인을, 단위 정보화전망계획은 지역정보화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10 조 (단계별정보화계획)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화전망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정보화계획을 작성하여 정보

화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정보화계획초안의 작성 및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화전망계획, 단계별정보화계획에 기초하여 당해년도 정보화계획 초안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작성하고 국가계획기관과 정보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정보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제기된 정보화계획초안을 심의하고 국가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정보화계획의 심의, 승인,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제기된 정보화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정보화계획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정보화계획을 월별로 분할하여 정보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정보화계획의 실행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 등록된 정보화계획을 분기별, 지표별로 실행하고 그 정형을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계획에 없거나 계획등록을 하지 않고 정보화대상을 실현하였을 경우에는 실적 으로 평가하 지 않는다.

제 15 조 (정보화계획실행정형의 장악)

정보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화계획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화계획실행 정형을 정보화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정보화 실현

제 16 조 (표준화, 규격화의 선행)

중앙정보화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은 정보화사업에서 표준화, 규격화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정보화와 관련한 국가규격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부문규격은 중앙정보화지도기관이 제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표준과 규격에 준하여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정보화대상의 설계)

정보화계획에 따라 정보화를 실현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화대상에 대한 설계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설계문건을 정보화지도기관이 정해주는 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작성할수도 있다.

작성한 설계문건은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제기된 설계문건을 정해진 기일안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한 다음 그 정형을 설계문건을 작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된 설계는 해당 정보화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정보화대상의 구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설계문건에 준하여 정보통신하부구조, 정보체계, 자료기지 같은것을 구축하여야 한다.

승인된 설계문건은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계문건을 변경시키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정보화대상의 보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준에 맞게 정보화대상에 대한 보안대책을 세우고 해당한 심의를 받은 다음 등록하여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정보화대상은 운영할수 없다.

제 20 조 (정보화대상의 운영 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화대상을 운영 하려는 경우 운영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보화대상에 대한 운영검사는 운영검사기관 또는 정보화지도기관으로부터 운영검사를 위 임받은 기관이 한다.

운영검사기관과 운영검사를 위 임받은 기관은 운영검사를 제정된 기 일안에 진행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운영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정보화대상의 운영단위조직)

정보화대상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단위를 실정에 맞게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2 조 (정보화대상의 관리운영)

운영검사에서 합격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또는 위 탁하여 정보화대상을 관리운영 할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도서와 표준조작법 같은 해당 문건에 준하여 정보화대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 23 조 (정보자원의 조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단위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자원조성을 정해진 규격과 승인된 자료에 준하여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정보자원의 관리,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자원류형별에 따르는 관리방법을 바로 정하고 정보 자원을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보자원의 관리, 리용과정에 정보자원을 루실,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4 장 정보화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 25 조 (정보통신하부구조의 구축)

중앙정보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통신망과 부문별, 지역별정보봉사기지를 합리적으로

로 구축하고 부단히 개선하여 정보통신하부구조를 완비해나가야 한다.

제 26 조 (정보산업의 전문화)

중앙정보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산업부문 기관, 기업소의 전문화수준을 부단히 높여 정보산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해나가야 한다.

제 27 조 (정보기술수단의 계획적생산과 국산화)

정보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정보화에 필요한 정보설비와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 기술수단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며 우리 식의 정보기술수단을 적극 개발도입하여 정보화사업에서 국산화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제 28 조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정보화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화사업에서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

제 29 조 (정보화인재 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라의 정보화를 적극 실현해 나갈수 있도록 정보화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제 30 조 (정보화수준의 제고, 평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과 지역, 단위의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중앙정보화지도기관은 정보화수준평가지표를 바로 정하고 나라의 정보화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 31 조 (정보화성과의 소개선전,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

정보화지도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정보화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정보화성과전람회와 TV, 신문, 방송 등 여러가지 형식과 수단,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중앙정보화지도기관은 해마다 정보화성과전람회를 조직 운영 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출품대상, 연구사, 기술자, 일군에게 여러가지 증서와 메달, 우승기, 시상품 같은것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 32 조 (정보화의 효과성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화가 실현되는데 맞게 해당한 기구적, 행정실무적 대책을 따라 세워 그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제 33 조 (정보화사업에 대한 투자)

국가계획 기관과 재정 기관은 국가예산편성 에서 정보화사업 에 대 한 투자몫을 체계적으로 늘 이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예산과 기업소기금을 정보화사업에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제 34 조 (정보화기금)

중앙정보화지도기관과 재정 은행 기관은 정보화기금을 확보하고 합리 적 으 로 리용하도록 장악 통제하여 정보화사업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화기금의 납부, 리용과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 35 조 (사회적동원면제, 우대)

정보화지도기관과 로동행정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연구사, 기술자에게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정보화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며 그들이 정보화사업에 전심전력 할수 있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36 조 (정보화와 관련한 교류와 협조합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기관, 단체, 개인과 공동개발, 전시회, 합영합작 같은 정보화와 관련한 교류와 협조를 진행하려는 경우 중앙 정보화지도기관과 합의 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37 조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정보화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38 조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도)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정보화지도기관이 한다.

내 각과 중앙정보화지도기 관은 정보화사업정 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 39 조 (비상설위원회의 조직, 운영)

국가관리, 경제관리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설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를 조직, 운영 한다.

정보화대상의 계획, 설계, 예산 같은것의 심의를 위하여 비상설로 중앙정보화 지도기관에는 중앙정보화대상심의위원회를, 해당 기관에는 부문별 또는 지역 별 정보화대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 40 조 (정보화사업 에 대 한 감독통제)

정 보화사업 에 대 한 감독통제 는 해 당 감독통제기 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정보화사업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41 조 (중지 처 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화대상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1. 해당한 심의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정보화대상을 운영하였을 경우
2. 운영검사를 받지 않고 정보화대상을 운영 하였을 경우
3. 정보화대상을 정해진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제 42 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 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 개월 이하의 무보수
로동, 로동 교양처벌을 준다.

1. 정보화계획을 바로세우지 않거나 제때에 등록하지 않아 국가의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정보화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시달된 정보화계획을 미달하였거나 계획실행정형을 거짓보고하였을 경우
3. 정보화대상의 설계, 구축, 관리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바로 리행하지 않아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표준화, 규격화사업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표준과 규격에 어긋나게 정보화를
실현하였을 경우
5. 설계문건을 작성하지 않거나 심의, 승인받지 않고 또는 승인된 설계문건과
어긋나게 정보화대상을 구축하였을 경우
6. 정보화대상의 보안과 관련한 심의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정보화대상을
운영하였을 경우
7. 운영검사를 받지 않고 정보화대상을 운영하였을 경우
8. 정보화대상을 정해진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9. 정보자원조성을 정해진 규격과 승인된 자료에 준하여 하지 않았거나 정보자원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정보자원을 루실, 손상시켰을 경우
8. 정보화대상을 정해진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9. 정보자원조성을 정해진 규격과 승인된 자료에 준하여 하지 않았거나 정보자원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정보자원을 루실, 손상시켰을 경우
10. 정보화기금의 납부,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11. 중앙정보화지도기관의 합의없이 정보화와 관련한 교류와 협조를 진행하였을 경우

12. 그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 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 는 3 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 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 43 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
적책 임을 지운다.